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취약계층 지원 의무화 등〉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나아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미화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3. 28.
3. 회부연월일 : 2025.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해 안전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4조의5).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 의무를 지원 의무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 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34조의 5제10항).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 ----- ----- ----- ----- -----지원하여야-----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 ⑨ (생략)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위기관

현행	개정안
⑩ (생략)	리 매뉴얼에 반영하여야 한다.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¹⁾으로, 현행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²⁾.

이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주요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호우·태풍 발생 시 장애인·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우선대피를 위한 1:1 대피도우미(민간조력자) 매칭 지원, 고령자 대상 국민행동요령 제작·배포 등의 지원을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고령자가 많은 읍·면지역의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 중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보행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도로를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경로당에 냉방비·냉방물품을 지원하고, 폭염 특보 발령 시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예찰 주기를 확대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대한 에어컨 신규 설치·교체 및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업무를 위하여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고려하도록 명시³⁾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현황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등 안전취약계층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 것을 ‘지원’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반드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3년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3년마다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경우 2027년에 1억 400만원, 2030년에 1억 1,000만원 등 향후 5년동안 총 2억 1,400만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⁴⁾.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 실익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 및 현행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무화와 관련하여,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보다 재난 및 각종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있는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4)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실시 (안 제34조의5제10항 신설)	104	-	-	110	-	214	43

주: 1. 안전취약계층 지원 실태조사 실시(안 제34조의5제10항 신설)는 의무규정

2.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보건복지부의 통합지원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보다 강화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개정안과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에 포괄적인 지원 의무만을 규정할 경우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전취약계층의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위기관리 매뉴얼 반영에 관한 규정 신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집·관리할 수 있는 안전정보의 범위에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피해에 관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수집된 안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개를 위하여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9(안전정보의 구축·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위와 같이 현행법 체계에서도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를 수집·공개할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시 반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실익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현재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용역(2023.10.~2025. 10.)을 실시 중이고, 서울·대전·강원·전남 등 4개 시·도의 안전취약계층 4,000명에 대하여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시범조사’(2024. 6.~2025. 1)를 완료하였는데,

시범조사는 대상자가 입은 재난의 유형, 규모 등 안전취약계층의 피해 현황에 관한 문항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지원 주체, 피해 회복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지원 유형, 향후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

“안전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관한 통계, 지리정보 및 안전정책에 관한 정보

1의2.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각종 사고 피해에 관한 통계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4.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 결과

5.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 평가 결과

6.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결과

7. 제69조제5항 후단에 따른 개선권고 등의 조치결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관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수집·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이 공개하는 시설 등에 대한 각종 안전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공개하기 위하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 행정기관 및 국민이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안전정보 등의 수집·공개·관리,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원 유형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 15,000명에 대한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조사’(2025.7.~2025.11.)를 실시⁶⁾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통계를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⁷⁾로 지정을 추진(2025. 6.)할 예정임.

따라서 현행법 체계에 따라 개정안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안전취약계층에 관한 지원 실태조사 및 그 결과의 위기관리 매뉴얼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49

6) **조사내용:** 재난·사고 행동요령 인지도, 피해 경험, 피해 경험 시 피해 규모 및 후유증, 국내 안전 수준, 관련 정부 정책 인식 등

7)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목적 및 방법 등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표본규모가 지나치게 작거나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 또는 목적 등이 특정 이익집단 또는 특정부문에 편중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작성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④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한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등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